

2026년 「유니콘브릿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성장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혁신성·성장성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에 기술 금융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의 도약 촉진
- 협약기간*** : 협약체결 후 10개월 ('26.4월~'27.1월 예정)
* 선정평가 일정 등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규모** :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①글로벌시장 개척자금, ②특별보증, ③후속 프로그램 등

구 분	세부 항목	주요 내용
글로벌시장 개척자금	①-1. 1차년도	· 기업당 6억원 지원
	①-2. 2차년도*	· 기업당 10억원 추가 지원
특별보증	②-1. 1차년도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
	②-2. 2차년도*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추가 지원
후속 프로그램	③ 글로벌진출 프로그램 등	· 유니콘 등극 지원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2차년도 추가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는 '27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변동 가능

2

세부지원내용

1 글로벌시장 개척자금

정부지원
70% 미만

·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70% 미만 & 기업당 6억원 이하**

- 선정기업 중 사업 성과 우수기업*은 2차년도 사업비 10억원 추가지원
- * 1차년도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社
- ** 2차년도 추가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는 '27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변동 가능
- 글로벌시장 개척자금 등에 필요한 직접비로 구성하며, 사업비 비목 등은 [참고2] 및 [별첨1] 세부내용 참조
- 단계별 마일스톤 미달성시 "실패판정" 및 "사업비 환수" 예정

< 단계별 마일스톤 및 환수금액 예시 >

구 분	지원금액	단계별 마일스톤	환수금액	
			성실실패	불성실실패
1차년도	6억원	후속투자 100억원 이상	4.2억원	6억원
2차년도	10억원	후속투자 200억원 이상	7억원	10억원

* 단계별 사업 종료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성공여부, 성실실패 및 불성실실패 판정

대응자금
30% 이상

·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30% 이상 선정기업 대응자금 발생**

- 협약체결 시 대응자금 투입계획서 및 관련 증빙 필수 제출 (☞ 선정 시 안내)
-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로 구성
- 대응자금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예정

예시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860백만원	600백만원	88백만원	172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2 금융지원

특별보증

· 보증이용 희망기업에 같은기업 당 최대 100억원 보증 지원

- 신청접수 화면에서 보증희망 여부 및 신청금액 입력
- 보증 지원금액은 기업의 신청금액, 자금소요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되며, 추정매출액 및 투자유치금액 등에 따라 보증금액 산정 우대
- 선정기업 중 사업 성과 우수기업*은 2차년도에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 추가지원
- * 1차년도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社
- ** 2차년도 추가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는 '27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 시 보증금액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우선부보증으로 취급
- 기술보증 제규정 등에 따라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특별보증 지원 주요 안내사항 >

-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유동화회사 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 보증연계투자 제외)을 포함한 금액임
- 신보(보증재단 포함) 거래기업은 기존 보증금액을 전액상환하거나 기보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도입처, 품목, 수량 등), 도입자금 규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어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3 후속 프로그램

투자유치 지원

- **(유니콘 드라이브)** 기업가치 1조원 달성이 임박한 기업에 투자유치 컨설팅을 제공하여 유니콘 등극 밀착 지원
- **(글로벌IR)** 글로벌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한 IR 행사 참여 기회 제공

글로벌 시장개척

- **(글로벌 멤버십)** 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문가, 글로벌 투자자 등을 매칭하여 해외 투자 유치 멘토링 지원
- **(전시회 및 컨퍼런스)** 해외 진출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 전시회·컨퍼런스 참여 지원
- **(글로벌진출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 및 법인설립 등 세부 진행 단계별 컨설팅 제공으로 해외 영업기반 확보 지원
- **(해외특허지원)** 국제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변리사 수수료, 각종 비용 등) 지원으로 해외시장에서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

기타

- **(공공시장 진출지원)** 공공기관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 조달 멘토링 지원
- **(1조클럽)** 1조원 이상 가치를 보유한 선후배기업 간 노하우 공유, 투자자와의 접점 확대 등을 위해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 운영
- **(유니콘컨시어지)** 선정기업에 유니콘 관련 각종 정보를 총괄 제공하는 올인원(all-in-one) 상담창구를 운영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대상 요건**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과 선택요건(1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분야는 10년 이내)** 혹은 벤처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 접수마감일이 창업기업확인서 상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인정

*** 접수마감일이 벤처기업확인서 상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인정

필수	누적 투자유치 50억원 이상	
	누적투자 산정기준	•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¹⁾ 에서 50억원 이상(누적)투자 ²⁾ 유치기업
선택①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기업가치 산정기준 ³⁾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공고일 이전 벤처투자기관의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선택②	팁스 R&D 혹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 기업	
	사업수행 완료기준	• 팁스 R&D 사업 수행 완료(성공)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 기업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2) 투자인정 범위

- 공고일 기준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현물, 구주투자 제외)

3)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단, 최종투자가 SAFE, CONVERTIBLE NOTE 등 기업가치 산정을 유예하는 형식의 투자인 경우, 직전 투자 건의 기업가치를 적용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 계획인가 또는 변제 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4.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④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재(기)업

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⑦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⑨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참고4]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5] 해당하는 재(기)업

⑩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6]에 해당 하는 재(기)업

⑪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기)업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1월 30일(금) 10:00 ~ 2월 20일(금) 18: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② **'제출' 버튼을 클릭** 후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신청완료 내역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8: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평가 진행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신청서류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 >

- ①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접속(www.kibo.or.kr/dbranch) → ② 'Quick MENU 유니콘 브릿지 신청' → ③ '로그인' → ④ '양식다운로드', '신청하기'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 → ⑦ 제출('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별첨2]' 참고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하며,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해 인정

□ **제출 서류**

순번	제출서류	제출시점	필수여부
1	피치덱(IR자료 기업-기술 소개자료 등, 자유양식)	신청 시	필수
2	투자유치내역서 [별첨3]		
3	투자계약서 사본(투자유치내역서 상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4	딥테크분야 영위기업 자가점검표 [별첨4]		
5	사전동의서 [신청기업용, 개인용] [별첨5-1, 5-2]		
6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전년도말('25.12.31) 기준) * 기준일자: '25.12.31.~'25.12.31.일자로 조회		
7	주주명부		
8	외부감사보고서('21~'24년)*, 부가세신고서('25.1.1.~12.31.) * 외부감사 미실시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제출 생략가능		
9	사업 신청 주요 사항 요약서[별첨6]		
10	1) 창업기업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2) 벤처기업확인서 * 예비벤처유형은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11	초격차 스타트업 혹은 TIPS 졸업 성공판정 공문(혹은 성공판정서)		
12	기술사업계획서 [별첨1]	1차평가 통과 시	필수
13	기타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관련 자료(제출서류 별도안내 예정)		
14	발표평가자료	2차평가 통과 시	필수

*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26.1.30(금)
▼		
온라인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www.kibo.or.kr/dbranch)	1.30(금) ~ 2.20(금)
▼		
① 1차 평가 (요건 및 기업가치 산정)	▶ 2차 평가 대상기업(100개사 이내) 선정 * 대상기업 기본요건 충족 확인 및 정량평가 실시	~ 2.27(금)
▼		
②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유니콘선정협의회)	▶ (1단계 : 기술평가·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2단계 : 유니콘선정협의회) 선정심의위원회 부의 대상기업(75개사 내외) 선정	~ 4월초
▼		
③ 최종평가 (최종선정위원회)	▶ 2차 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4월 중순
▼		
최종선정	▶ 유니콘브릿지 최종 선정기업(50개사 내외) 발표	4월 중순
▼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등	▶ 글로벌시장 개척자금, 특별보증 등	4월말 ~

□ **평가 방법**

① **1차평가(서류평가) 기준**

- (1단계: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검토

* 투자실적, 기업가치,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 (2단계: **정량평가**) 평가지표에 따른 서류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투자유치금액	35	2. 기업가치	30
3. 매출액	20	4. 고용인원	15
총 점	100		
※ 총점이 동일할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득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배정 * 가점 : 초격차-TIPS 완료기업(3점), 아가예비유니콘 기업(2점), 딥테크 영위기업(1점), 비수도권 소재기업(1점) ** 같은 기업에 가점 최대 3점 부여(가점 항목 간 중복은 인정)			

② **2차평가(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심층평가) 기준**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1차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투자용 기술평가모형 적용) 및 보증심사 진행

- (2단계: **유니콘선정협의회**)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가 심층 토론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해외진출 가능성	30	2. 기업가치 성장추세	25
3. 기술평가등급	20	4. 정책지원 적합성	15
5. 매출 증가추세	10	 	
총 점	100		
※ 총점이 동일할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득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배정 * 가점 : 초격차-TIPS 완료기업(3점), 아가예비유니콘 기업(2점), 딥테크 영위기업(1점), 비수도권 소재기업(1점) ** 같은 기업에 가점 최대 3점 부여(가점 항목 간 중복은 인정)			

③ 최종평가 (전문가평가) 기준

- 유니콘 도약 가능성, 정책적 지원 타당성 등 정성지표 기반 발표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유니콘 도약가능성	30	2. 해외성공 가능성	20
3. 정책지원 타당성	20	4. 보유기술 우수성	20
5. 성과공유 가능성 (ESG 경영 실적가능성 등)	10	 	
총 점	100		
※ 총점이 동일할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득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배정 (동점항목 간 해외성공 가능성→정책지원 타당성→보유기술 우수성 순서로 순위 배정) * 가점 : 초격차TIPS 완료기업(3점), 아기.에비유니콘 기업(2점), 딥테크 영위기업(1점), 비수도권 소재기업(1점) ** 같은 기업에 가점 최대 3점 부여(가점 항목 간 중복은 인정)			

6

유의 사항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스케일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청구등행위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동 공고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본 사업 세부지침, 전문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사업 신청은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후에도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것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신청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 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미제출 등 사유로 신청 자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전체 평가과정은 기업 대표자가 반드시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단, 천재지변 또는 외국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평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으로 허용 (대표자 위임)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전문 기관에 신청 가능함
- 전문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본 사업과 중복수행을 허용하지 않는 타 사업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사업수행 시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유니콘브릿지사업 세부운영지침」 및 전문기관의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기업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지출(회계처리) 가능해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최종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건별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특별 보증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유니콘브릿지 사업 세부운영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를 현금으로 대응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동안 협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성과 달성을 통한 조기졸업 외 사유로 협약종료 불가함

7

문의처

구 분	담 당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기술보증기금 (전문기관)	051-606-7694, 7656
디지털지점 이용 관련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참 고
1. 벤처투자기관 기준
 2. 사업비 집행 비목
 3. 성공환원 주요사항 안내
 4.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기업
 5.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6.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 별 첨
1. 기술사업계획서
 2.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3. 투자유치내역서
 4. 딥테크분야 영위기업 자가점검표
 5. 사전동의서(신청기업用, 개인用)
 6. 사업 신청 주요 사항 요약서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1)~(6)에 따른 자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⑨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⑫ **기술보증기금**
-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⑭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⑮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 투자자
(온라인 소액투자자 포함) 투자금액 제외

참고2

(유니콘브릿지) 사업비 집행 비목

□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직접비를 집행

비목	내용
해외지사 설립비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거래 수행 대가로서 해외법인(지사 등) 설립 비용
특허, 인증, 시험 인증비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및 특허 출원등록비용, 시험·인증비 등에 요구되는 비용
전시회, 학회 참가비	기술이전비, 글로벌 AI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등 비용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비	제품(서비스)을 글로벌 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 비용, 디자인 개발, 기타 마케팅에 드는 비용
홍보비	타깃시장 홍보물(영상, 광고, 일간지 등) 제작비, 온·오프라인 광고 게재비, 홈페이지 제작비
인건비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 혹은 투자유치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진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제품(서비스)개선 필요시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여비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전담기관 또는 지정 회계법인의 사전 검토 및 승인 필요
기계장치비	창업기업 보유 제품(서비스) 제작 관련 기자재 비용 ※ 현물 계상만 가능
재료비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현물 계상만 가능

- **(적용대상)** '26년 유니콘브릿지 선정기업 중 선정평가 순위가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추가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우선순위 업체의 사업 참여 포기 시 차순위 업체 선정
- **(추가지원 사업비 결정 금액)** 선정 시 배정받는 추가지원사업비는 10억원이며, 임의로 추가지원사업비 금액 조정 불가
- **(지원금 성격)** 추가지원사업비도 정부지원사업비로 간주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집행·관리
- **(성공환원금 반납 기한)** 2차년도 사업 지원 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0.5%씩 반납
- **(반납기준)** 계속과제 최종평가 시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지원사업비의 최대 50%를 반납
* 성실실패와 불성실실패는 각각 추가지원사업비의 70%(정액), 전액을 환수

지원방식	추가지원사업비	회수		
		성공	성실 실패(미흡)	불성실 실패(불량)
성공환원형 (2차년도)	예시: 10억원	추가지원사업비 최대 50% (예시 5억원)	추가지원사업비 70%(정액) (예시 7억원)	추가지원사업비 전액 (예시 10억원)

- **(기타사항)** 성공환원금은 분할 납부가 불가하며, 매년 납부금을 고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납부 기한 내 미납되는 경우, 납부 기한의 다음달부터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 이자를 부과할 수 있음

< 보증금지기업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또는 출자한 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 경영자
 -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8.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 마. 기금이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기금이 상환 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참고5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新	舊
도박 게임 관련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3340	3340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46463, 47640	46463, 47640
	· 도박기계 임대업	69390	76390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75999	75995, 75999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91113
	·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91242, 91249
사치 향락 관련	· 주류 및 담배 중개업	46102	46102
	· 귀금속 중개업	46109	46107
	·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46331, 47221	46331, 47231, 46333, 47232
	· 귀금속 도소매업	46492, 47830	46492, 47830
	· 주점업	5621	5621
	·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91223
	· 무도장 운영업	91291	91291
	· 마사지업	96122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68111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681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1, 68222	68221, 68222
기타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142	59142
	· 전화방	91229	91229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1	91241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96992	96992

참고6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구 분	세부항목
결격 요건*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최대주주인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와 동일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한 것을 심사
	② 실제경영자가(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 ①~④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지원(신청) 불가